

석면해체·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보고서

접수번호	접수일	
제 출 인	상호(대표자) (유)제이알	사업자등록번호 : 401-81-27273
	주소: 전북 군산시 상지곡2길 9-1, 1층(지곡동, 3층) (전화번호 : 063-467-1657)	
건 축 물	건물명(현장명) : 군산평화감리교회 신축공사중 석면해체공사	위치 : 전북 군산시 하나운2길 31-1 (나운동, 평화교회)
	연면적(m ²) : 1,144.79(m ²)	작업기간 : 2019년 08월 09일 ~ 2019년 08월 15일
	석면건축자재 면적: 874.19m ²	
측정기관	상호(대표자) : (주)석면스토리(주영곤)	사업자등록번호 : 317-81-31171
	주 소 :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831, 105호(팔복동2가)	
측정일시	2019년 08월 09일~08월 10일	
측정결과	불임 참조	
측정지점 위치 (도식도)	불임 참조	

「석면안전관리법」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라 석면해체·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를 제출합니다.

2019년 08월 일

제출인 (유)제이알

(서명 또는 인)



군산시청

첨부서류	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17호의6서식의 석면해체·제거작업 신고서 사본	수수료 없 음
------	--	------------

석면농도측정 결과표

1. 작업장 개요

석면해체제거업자	현장명(공사명·작업명)	군산평화감리교회신축공사중석면해체공사		
	현장 소재지	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833-4번지		
	석면해체·제거작업 신고번호	군산-20190140	상 호 :	(유)제이알
	전화번호	063-467-1657	대표자 :	이 은 속

2. 측정기간 - 2019년 08월 09일

3. 측정결과

시료번호	측정 위치	측정시간(분)	측정 결과(f/cc)	초과여부
ASS0809-1	부지경계선	240	-	검출한계미만
ASS0809-2	부지경계선	240	-	검출한계미만
ASS0809-3	부지경계선	240	-	검출한계미만
ASS0809-4	부지경계선	240	-	검출한계미만
ASS0809-5	위생설비입구	40	0.003	기준치이하
ASS0809-6	작업장주변	120	0.004	기준치이하
ASS0809-7	폐기물반출구	40	0.002	기준치이하
ASS0809-8	폐기물보관지점	40	-	검출한계미만
ASS0809-9	폐기물보관지점	40	-	검출한계미만

4. 측정 위치도(측정 장소)

"측정 위치도 (측정 장소) 후면 참조"

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」 제80조의12에 따라 석면농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.

2019년 08월 일

석면스토리(주)



석면해체·제거업자 (유)제이알 귀하

❖ 측정 위치(도식도)

측정 위치 도식도 (2019년 08월 09일)



2. 석면비산측정 사진대지(08월 09일)

연번	시료번호	측정지점	측정결과(f/cc)	초과 여부	비고(채취 사진)
1	ASS0809-1	부지경계선1	-	0.01 f/cc 미만	
2	ASS0809-2	부지경계선2	-	0.01 f/cc 미만	
3	ASS0809-3	부지경계선3	-	0.01 f/cc 미만	
4	ASS0809-4	부지경계선4	-	0.01 f/cc 미만	
5	ASS0809-5	위생설비입구	0.003	0.01 f/cc 미만	
6	ASS0809-6	작업장주변	0.004	0.01 f/cc 미만	

연번	시료번호	측정지점	측정결과(f/cc)	초과 여부	비고(채취 사진)
7	ASS0809-7	폐기물반출구	0.002	0.01 f/cc 미만	
8	ASS0809-8	폐기물보관지점	-	0.01 f/cc 미만	
9	ASS0809-9	폐기물보관지점	-	0.01 f/cc 미만	

석면농도측정 결과표-1

1. 작업장 개요

석면해체제거업자	현장명(공사명·작업명)	군산평화감리교회신축공사중석면해체공사		
	현장 소재지	전북 군산시 하나운2길 31-1 (나운동, 평화교회)		
	석면해체·제거작업 신고번호	군산-20190140	상 호 :	(유)제이알
	전화번호	063-467-1657	대표자 :	이 은 숙

2. 측정기간 - 2019년 08월 10일

3. 측정결과

시료번호	측정 위치	측정시간(분)	측정 결과(f/cc)	초과여부
ASS0810-1	부지경계선	240	-	검출한계미만
ASS0810-2	부지경계선	240	-	검출한계미만
ASS0810-3	부지경계선	240	-	검출한계미만
ASS0810-4	부지경계선	240	-	검출한계미만
ASS0810-5	위생설비입구	40	0.002	기준치이하
ASS0810-6	작업장주변	120	0.005	기준치이하
ASS0810-7	음압기배출구	40	0.004	기준치이하
ASS0810-8	음압기배출구	40	0.003	기준치이하
ASS0810-9	폐기물반출구	40	0.004	기준치이하
ASS0810-10	폐기물보관지점	40	-	검출한계미만
ASS0810-11	폐기물보관지점	40	-	검출한계미만

4. 측정 위치도(측정 장소)

"측정 위치도 (측정 장소) 후면 참조"

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」 제80조의12에 따라 석면농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.

2019년 08월 일

석면스토리(주)



석면해체·제거업자 (유)제이알 귀하

❖ 측정 위치(도식도)

측정 위치 도식도 (2019년 08월 10일)



2. 석면비산측정 사진대지(08월 10일)

연번	시료번호	측정지점	측정결과(f/cc)	초과 여부	비고(채취 사진)
1	ASS0810-1	부지경계선1	-	0.01 f/cc 미만	
2	ASS0810-1	부지경계선2	-	0.01 f/cc 미만	
3	ASS0810-1	부지경계선3	-	0.01 f/cc 미만	
4	ASS0810-1	부지경계선4	-	0.01 f/cc 미만	
5	ASS0810-1	위생설비입구	0.002	0.01 f/cc 미만	
6	ASS0810-1	작업장주변	0.005	0.01 f/cc 미만	

연번	시료번호	측정지점	측정결과(f/cc)	초과 여부	비고(채취 사진)
7	ASS0810-1	음압기배출구	0.004	0.01 f/cc 미만	
8	ASS0810-1	음압기배출구	0.003	0.01 f/cc 미만	
9	ASS0810-1	폐기물반출구	0.004	0.01 f/cc 미만	
10	ASS0810-1	폐기물보관지점		0.01 f/cc 미만	
11	ASS0810-1	폐기물보관지점		0.01 f/cc 미만	

❖ 석면조사기관 지정서(고용노동부)

제2016-120003호

석면조사기관 지정서(변경)

기 관 명 석면스토리(주)
 소재지 (54853)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831 (팔복동2가) 105호 (팔복동2가) 105호()
 대표자성명 주영곤
 종 대행(지정) 사업장(0)개소 근로자(0)명
 한 계
 관 할 지 역
 지정사항 대행(지정) 사업장(0)개소 근로자(0)명
 한 계
 대행(지정) 전국
 지역

※ 준수사항

1. 석면조사기관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노동관서장의 자료제출요구 및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2. 석면조사기관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38조의2 규정의 의하여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2016. 7. 4

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



석면농도측정 결과보고서

석면해체·제거작업 신고번호		군 산 - 20190140	
신고현장	현장명 (공사명·작업명)	군산평화감리교회신축공사중 석면해체공사	전화번호
	소재지	전북 군산시 하나운2길 31-1 (나운동, 평화교회)	
신고인	석면해체·제거업자명	(유)제이알	고용노동부 등록번호 제4101호

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」 제80조의12에 따라 석면농도측정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.

2019년 08월 일

신고인(석면해체·제거업자)

(유)제이알



광주지방고용노동청군산지청장 귀하

첨부서류	별지 제17호의10서식의 석면농도측정 결과표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

석면농도측정 결과표

1. 작업장 개요

석면해체제거업자	현장명(공사명·작업명)	군산평화감리교회신축공사중 석면해체공사		
	현장 소재지	전라북도 군산시 하나운2길 31-1 (나운동, 평화교회)		
	석면해체·제거작업 신고번호	군 산 - 20190140	의뢰자	(유)제이알
	전화번호	063-467-1657	대표자	이 은 숙

2. 측정기간 - 2019년 08월 10일

3. 측정자(분석자 포함)

성 명	자격종목 및 등급	자격등록번호	비고
최 양 호	대기환경기사	79608601743	측정자
김 진 성	환경관련학과		분석자

4. 측정결과

순번	시료명	측정 위치	측정시간(분)	유량(ℓ/min)	측정농도(개/cm³)	초과여부
1	#1	지상 1F 교역자	100	10.36	0.002	기준치이하
2	#2	지상 1F 재정부	100	10.28	0.004	기준치이하
3	#3	지상 1F 복도	100	10.51	0.005	기준치이하
4	#4	지하 1F 방풍실	100	10.46	0.003	기준치이하
5	#5	지하 1F 예배당	100	10.22	0.003	기준치이하
6	#6	지하 1F 예배당	100	10.43	0.004	기준치이하
7	#7	지하 1F 예배당	100	10.38	0.005	기준치이하
8	#8	지상 2F 로비	100	10.34	0.002	기준치이하
9	#9	지상 2F 로비	100	10.22	0.003	기준치이하
*전소구역-전소로 인해 폐기물 및 구역내 봉괴로 비닐보양(밀폐) 할 수 없으므로 석면농도측정불가						

5. 측정 위치도(측정 장소)

"측정 위치도 (측정 장소) 별첨 후면 참조"

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」 제80조의12에 따라 석면농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.

2019년 08월 일

석면스토리(주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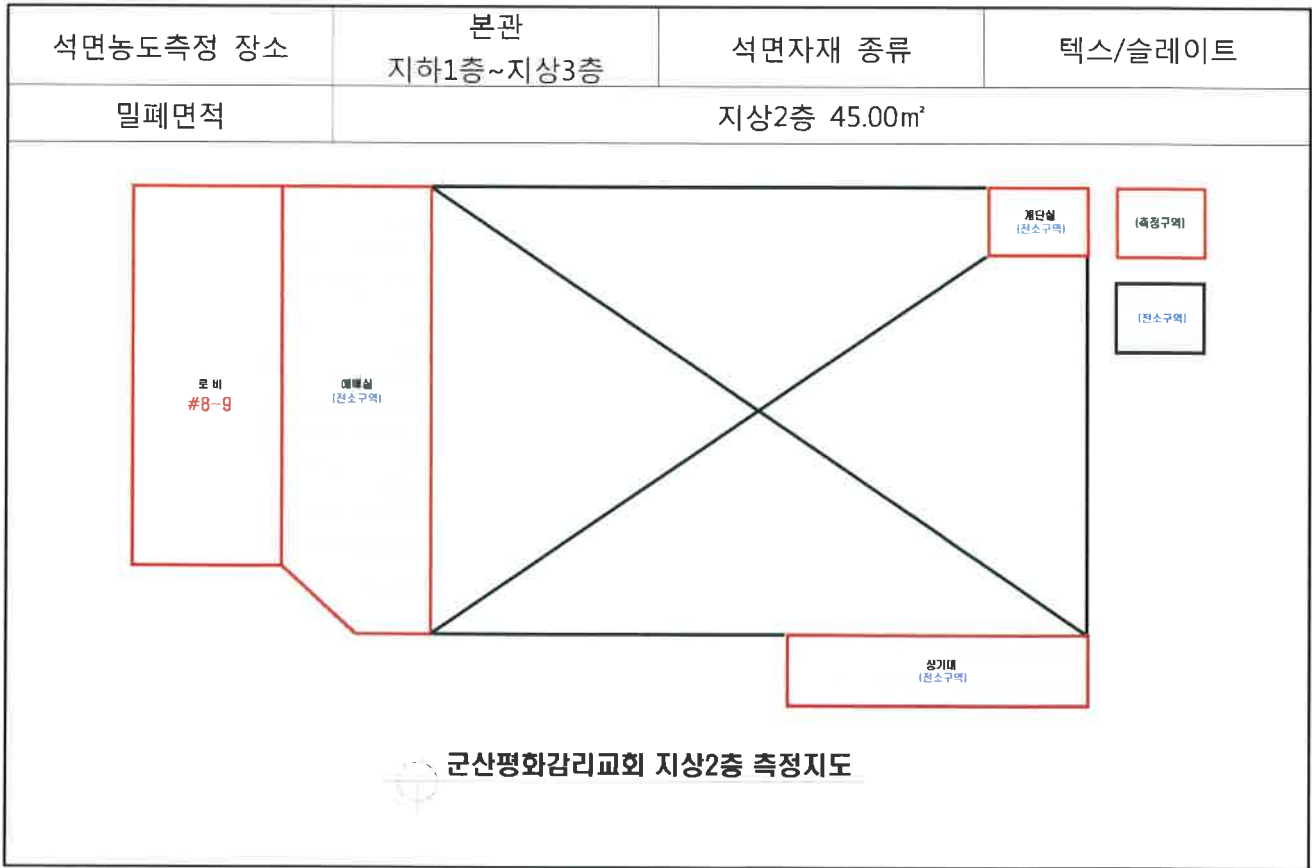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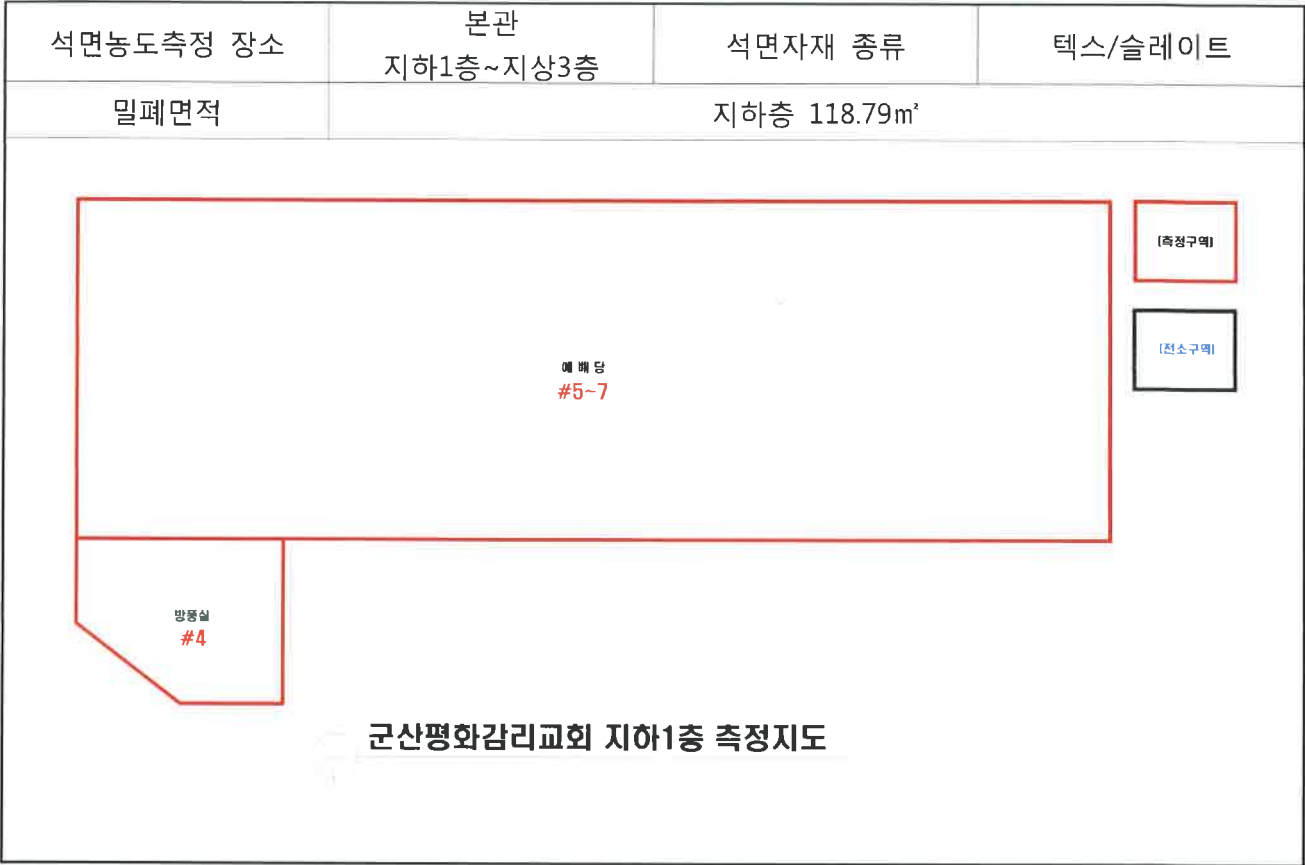


❖ 별첨 1. 측정 위치 도식

측 정 대 상 주 변 위 치 도



석면농도측정 장소	본관 지하1층~지상3층	석면자재 종류	텍스/슬레이트
밀폐면적	지상1층 36.43㎡		
외장실 대청부 #2 벽도 #3 고액지 #1 천교실 식당 조리실 시역 (측정구역) (진소구역) 군산평화감리교회 지상1층 측정지도			



석면농도측정 장소	본관 지하1층~지상3층	석면자재 종류	텍스/슬레이트
밀폐면적	전소구역		
단련실 (전소구역) 매화실 (전소구역) [측정구역] [전소구역] 방송실 (전소구역)			
군산평화감리교회 지상3층 측정지도			

6. 석면농도측정 사진대장

시 료 채 취 사 진					
시 료 번 호	#1	시 료 번 호	#2	시 료 번 호	#3
시료채취부위	지상 1F 교역자	시료채취부위	지상 1F 재정부	시료채취부위	지상 1F 복도
분 석 결 과	석면 0.01개/cm' 미만	분 석 결 과	석면 0.01개/cm' 미만	분 석 결 과	석면 0.01개/cm' 미만
  					
시 료 번 호	#4	시 료 번 호	#5~6	시 료 번 호	#7
시료채취부위	지하 1F 방풍실	시료채취부위	지하 1F 예배당	시료채취부위	지하 1F 예배당
분 석 결 과	석면 0.01개/cm' 미만	분 석 결 과	석면 0.01개/cm' 미만	분 석 결 과	석면 0.01개/cm' 미만
  					
시 료 번 호	#8~9	시 료 번 호	전소구역 측정불가	시 료 번 호	전소구역 측정불가
시료채취부위	지상 2F 로비	시료채취부위	지상 2F 성가대	시료채취부위	지상 2F 계단실
분 석 결 과	석면 0.01개/cm' 미만	분 석 결 과	석면 0.01개/cm' 미만	분 석 결 과	석면 0.01개/cm' 미만
  					

시 료 채 취 사 진

시 료 번 호	전소구역 측정불가	시 료 번 호	전소구역 측정불가	전소구역 측정불가	전소구역 측정불가
시료채취부위	지상 2F 예배실	시료채취부위	지상 3F 단련실	시료채취부위	지상 3F 예배실
분 석 결 과	석면 0.01개/cm' 미만	분 석 결 과	석면 0.01개/cm' 미만	분 석 결 과	석면 0.01개/cm' 미만
					
시 료 번 호	전소구역 측정불가	- 이 하 여 백 -			
시료채취부위	지상 3F 방송실				
분 석 결 과	석면 0.01개/cm' 미만				
					

❖ 별첨 석면조사기관지정서

제2016-120003호

석면조사기관 지정서(변경)

기관명 석면스토리(주)
소재지 (54853)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831 (팔복동2가) 105호 (팔복동2가) 105호()
대표자성명 주영곤

총 대행(지정) 한 계 사업장(0)개소, 근로자(0)명
지정사항 **관할지역**
대행(지정) 한 계 사업장(0)개소, 근로자(0)명
대행(지정) 지역 전국

※ 준수사항

1. 석면조사기관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노동관서장의 자료제출요구 및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2. 석면조사기관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38조의2 규정의 의하여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2016. 7. 4

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

